

의안번호	2207180
의 퇴 인	서삼석의원
회 답 일	2025. 1. 13.
추계번호	24B6445
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2(해상교통정보산업의 육성 및 지원)	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<u>해상교통정보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¹⁾</u>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산업(이하 “<u>해상교통정보산업</u>”이라 한다)을 육성할 수 있음 (제1항) 1.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관련 산업 2. 해상교통정보 수집·분석·가공·판매 산업 3.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기·장비 등의 제조·유지·보수 산업 4.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 (제2항) 1. 해상교통정보의 가공·수집·활용 등의 고도화 지원 2. 해상교통정보산업 관련 품질보장사업 및 보급·전환사업의 운영 3. 해상교통정보산업에 필요한 교육·인력양성 4. 해상교통정보산업의 표준화 및 수출지원 5. 해상교통정보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6. 그 밖에 해상교통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
- 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“해상교통정보”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
- 가. 선박의 위치, 침로(針路), 속력 및 항로 등 선박운항에 관한 정보
 - 나. 해양의 수심, 지형, 지질 등 수로(水路) 및 해도(海圖)에 관한 정보
 - 다. 선박의 통항량, 해양사고 및 항행경보(航行警報) 등 선박교통에 관한 정보
 - 라. 조류(潮流), 조석(潮汐) 및 해양기상 등 해양관측에 관한 정보
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를 분석·가공하여 생산된 정보
3. “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”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·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4조의2(해상교통 정보산업의 육성 및 지원)	• 제3호 －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·고도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(LTE-M)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(선박운항, 수로·해도, 선박교통 및 해양관측 정보 등)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사업 실시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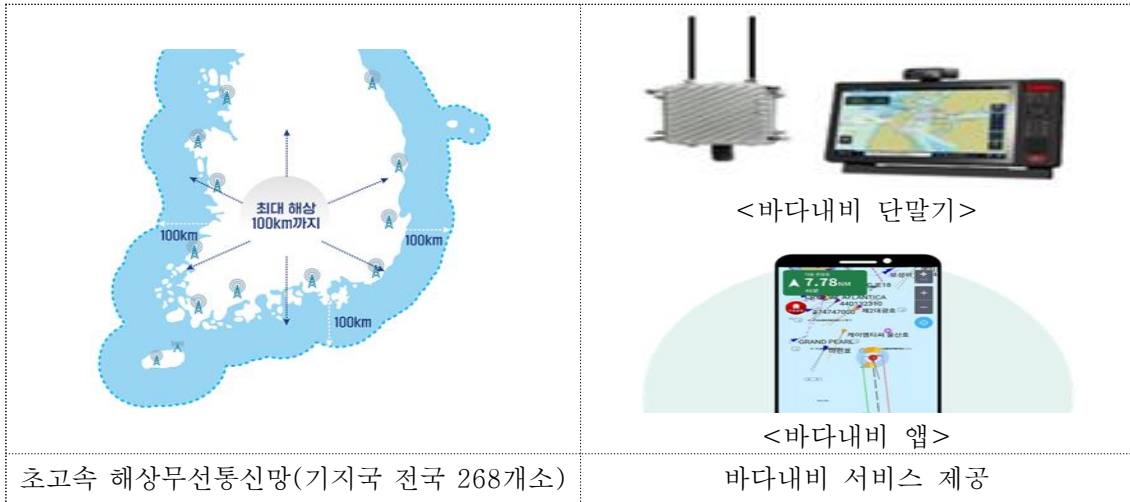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사업

-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(LTE-M/ 최대 연안 100km) 구축·운영
- 바다내비 선박단말기 보급·관리
-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행('21.1.30~) 및 시스템 운영 등
 - － (해양사고 예방 지원) 바다내비 단말기(선박)와 바다내비앱을 대상으로 최신 전자 해도, 충돌·좌초 예방 지원, 해양안전 정보, 항로 검증(단말기) 및 안내(앱)
 - － (해양안전·편의 지원) 선박간 문자·음성·영상 통합통신, 자동 입·출항 신고(어선), 긴급구조(SOS) 요청 기능, VTS 서비스 이용 안내

□ 사업 실적

- 전국 268개소('24.12 기준)에 구축·운영 중인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의 정기적 관리와 장비 장애시 긴급지원
- 바다내비 선박단말기 보급('24.11.21 기준, 누계 8,870척) 및 관리
- 해양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화 및 국제협력 추진 등

[그림 1] 바다내비 서비스 현황



□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

[표 1]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사업 관련 예결산 현황: 2023~2025년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주요내용	2023		2024		2025
	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
스마트 해양안전 교통정보(정보화) (4275-504)		24,848	23,341	22,858	21,007	22,439
-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운영	e-Nav 서비스 유지보수 (HW, SW), 시스템 안정 화·장비도입 및 센터 운 영 관련 소요 비용	6,611	6,008	4,182	3,458	3,712
-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망 운영	LTE-M 시스템·기지국 유지보수, 전용회선 지출 및 센터 운영 관련 소요 비용	18,237	17,333	18,676	17,549	18,727
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·운영 (6332-308)		3,751	3,693	3,109	3,086	2,668
- e-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운영	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 의 50% 지원 및 단말기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운 영경비 지원	2,425	2,425	1,825	1,825	1,284
- e-Nav 정책플랫폼 구 축	e-Nav 국제표준화 대응· 협력, 국제표준관리 협의 체 사무국 운영, 통합공공 망 상호운용성 확보 등	842	784	800	777	800

사업명	주요내용	2023		2024		2025
	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
-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 지원 시범사업	보조사업자 운영경비 지원 및 의료키트 보급, 친숙화 교육 등	484	484	484	484	484
-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	법정 기본계획(매5년) 수립을 위한 연구	—	—	—	—	100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- 안 제14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산업 유형 및 지원시책

해상교통정보산업 (안 제14조의2제1항)	지원시책 (안 제14조의2제2항)
1.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관련 산업 2. 해상교통정보 수집·분석·가공·판매 산업 3.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기·장비 등의 제조·유지·보수 산업 4.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업	1. 해상교통정보의 가공·수집·활용 등의 고도화 지원 2. 해상교통정보산업 관련 품질보장사업 및 보급·전환사업의 운영 3. 해상교통정보산업에 필요한 교육·인력양성 4. 해상교통정보산업의 표준화 및 수출지원 5. 해상교통정보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6. 그 밖에 해상교통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자료: 개정안을 바탕으로 발췌·정리

-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시책의 지원대상, 지원예산 규모,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